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 절차

1.0 목 적

규칙 제5장제9절 "발전기 정지 및 휴전계획 조정"에서 규정한 발전회원의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에 관한 업무절차 및 휴전업무의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전력수급의 안정, 전기설비의 보전 및 전력계통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본 별표의 발전기 정지 및 조정업무 절차는 발전사업자의 연간, 월간, 주 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 수립과 조정업무에 적용하고, 휴전업무 절차는 전기사업자의 전력설비 휴전작업 시행업무에 적용한다.<개정 2004.4.22.. 2016.5.12>

3.0 책임

- 3.1 발전사업자는 정해진 시기에 발전기 정지일정 등 관련자료를 전력거래소 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정해진 시기에 발전기 정지계획을 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2 전력거래소는 기간별 전력수급 전망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발전기 정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 협의후 결정하 며, 이때 발전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3 전력거래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발전기 정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4 전력거래소는 휴전계획 및 승인과 관련한 계통검토시 전력계통의 수급균 형, 계통안정, 계통이상시 복구업무 주관 등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해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 3.5 전기사업자는 휴전작업으로 인한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야 한다.
- 3.5.1 휴전요청시 최적의 휴전기간 산정 및 중복휴전작업 지양
- 3.5.2 휴전계획 및 검토조정시 전력거래소에 적극 협조
- 3.5.3 휴전업무 진행중 설비고장 또는 계통운영의 문제점 발생시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복구조치 시행
- 3.5.4 전기사업자는 작업여건 조성 및 사전준비를 철저히 시행하여 휴전작업이 계획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0 참고자료

- 4.1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 4.2 전력수급계획 종합시스템 최종보고서

5.0 용어의 정의

5.1 전력수급 전망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력을 확보하면서 수력, 화력, 원자력 등의 발전설비를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

- 5.2 계획정지
 - 발전설비의 운전상태 및 성능이 설계범위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설비의 이상발생전 또는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 정비활동으로 사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정비를 시행하기 위한 정지
- 5.3 임시정지 발전설비의 일부기기에 이상이 발생되었거나 차기 계획예방정비기간 이전 에 발전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는 단기간동안 정비를 시행하기 위한 정지
- 5.4 설비용량 발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개시 신고를 한 발전기의 정격용량
- 5.5 공급능력<삭제 2011.12.2>
- 5.5 운영능력<번호변경 2011.12.2> 예상치 못한 이상 발생시에도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력으로 써 공급능력에서 급전정지를 제외한 발전력
- 5.6 최대부하<번호변경 2011.12.2> 전력수요중 1시간 평균 최대값으로 기간에 따라 연간, 월간, 일간으로 구분
- 5.7 휴전<번호변경 2011.12.2> 전력설비의 수선유지, 변경, 개수, 신증설, 기타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 여 전력공급을 중지하는 것
- 5.8 계획휴전<번호변경 2011.12.2> 연월간 시행하는 정기휴전 회의를 거쳐 시행하는 휴전<개정 2008.10.31>
- 5.9 임시휴전<번호변경 2011.12.2> 송변전설비 운영 중 설비 이상징후 발생으로 인해 계획휴전 이외의 휴전 작업이 필요할 경우 시행하는 휴전<개정 2008.10.31>
- 5.9.1 설비 이상징후란 전력설비의 과열, 누유, 누기, 소음, 진동, 단선(전력선,

가공지선), 보호계전기 이상, DC 전원이상, CT/PT 이상, 절연기기 파손 등을 의미한다.[신설 2008.10.31]<번호변경 2011.12.2>

5.10 긴급휴전<번호변경 2011.12.2> 돌발사고, 인축사고, 화재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히 휴전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휴전

6.0 지침

- 6.1 발전기 정지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6.1.1 연간, 월간, 주간 및 정지요청의 순으로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단계를 거쳐, 발전소 운영여건 변경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 6.2 휴전작업은 연간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345kV 이상 차단기 및 시운전발전기 관련 전기설비에 대한 휴전작업은 월간 휴 전계획에 반영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4.4.22, 2005.10.10, 2008.10.31>
- 6.2.1 휴전계획 수립시 작업계획의 합리적 반영으로 휴전작업 빈도를 억제한다.

7.0 발전기 정지계획 수립 및 정지통보 절차

- 7.1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기준
- 7.1.1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체제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을 통하여 연중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수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적정 공급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단, 적정 공급예비력은 아래 각호를 고려한 합산 값으로 산정하여 매년 계통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13., 2021.12.28., 2023.9.26.>
 - ① 전력수급 비상 준비단계 공급예비력 수준 [신설 2019.12.13.] <개정 2021.12.28.>
 - ② 속응성자원 운영 기준에 따른 확보량 [신설 2019.12.13.]<개정 2021.12.28.>
 - ③ 발전계획 변경이 필요한 수요예측 오차 수준 [신설 2019.12.13.]<개 정 2021.12.28.>
 - ④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오차 수준
 - 단,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오차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오차율×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신설 2021.12.28.]
- 7.2 연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 수립 절차
- 7.2.1 전기사업자(중앙급전발전기 보유 구역전기사업자 제외)와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 초과인 연료전지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향후 2년간의 발전기 정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들을 4월말까지 발전기 정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집합전력자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3.17., 2015.9.30., 2018.12.12., 2019.1.2.,

- 7.2.1.1 발전사업자 제출자료
 - 가. 발전설비 신·증설 및 폐지계획, 시운전계획
 - 예) 신·증설발전기는 사업개시전 기간별 가능출력
 - 나. 발전기별 계획예방정비 일정, 희망일자, 조정가능기간
 - 다. 간이정비 및 기타 발전기 정지를 수반하는 모든 정지일정
 - 라. 발전기의 가능출력이 정격출력보다 적은 기간의 일별 가능출력
 - 예) 열공급발전기의 열공급에 의한 출력감소량 복합발전기의 외기온도 상승에 따른 출력감소량 수력발전기의 댐수위저하에 따른 출력감소량 등
 - 마. 발전기의 가능출력이 정격출력보다 많은 기간의 일별 가능출력
 - 예) 원자력발전기의 상시운전가능한 출력증가량
 - 바. 기타 발전기별 특기사항
 - 예) 서울화력 하절기 냉각수 온도상승시 출력감소량 복합화력의 가스터빈 정지시 증기터빈 출력감소량
- 7.2.1.2 판매사업자 제출자료
 - 가. 연간 구입전력계획
 - 나. 연간 수요관리 목표량
- 7.2.1.3 송전사업자 제출자료 [신설 2015.5.7.]
 - 가.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신·증설 및 폐지계획, 시운전계획
 - 나.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연간 정비일정
 - 다. 기타 가능출력 변동 내역
- 7.2.2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발전기의 경제적 운영을 위하여 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기상, 심야수요, 사회적요인 등)를 고려하여 2년간의 일별 최대부하를 예측한다.<개정 2011.12.2>
- 7.2.3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최초 수급 전망(안)을 수립하고, 발전기별 정지계획 및 월별 예비력을 관련 전기사업 자에게 6월말까지 통보한다. <개정 2015.3.17.>
- 7.2.3.1 전력거래소는 향후 2년간의 수급전망(안) 수립에 필요한 발전기 정지계획 자료들을 종합하여 일별 공급능력을 산출한다.
 - 가. 발전설비 총 설비용량
 - 나. 총 발전기 정지량

- 계획정지, 중간정지 및 기타 발전기 정지량
- 다. 구입전력량
 -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하지 않은 회원, 기타
- 라. 신·증설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
- 마. 총 출력증가/감소량
- 열공급발전기의 열공급에 의한 출력감소량
- 복합화력의 외기온도 상승에 따른 출력감소량
- 수력발전기의 댐수위저하에 따른 출력감소량
- 원자력발전기의 상시운전가능한 출력증가량
- 발전기 성능저하에 의한 출력감소량
- 바. 기타 특기사항
- 수요관리 목표량 등
- 7.2.3.2 7.2.2항과 7.2.3.1항에 의해 예측된 최대부하와 공급능력으로 산출한 일 별 전력수급 결과를 검토하여 발전기 정지일정을 조정한다.
 - 가. 일별 전력수급을 산출하여 적정수준의 예비력 확보 및 계통안정 여부 를 검토한다.
 - 나. 연중 적정수준의 예비력 및 계통안정성 확보 및 발전설비의 경제적 운영여부가 확인되면 발전기별 예방정비 일정을 확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전기별 예방정비일정 조정가능기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일정을 조정한다. 다. 만일 예방정비일정 조정가능기간을 이용해서도 적정예비력 확보 등이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재조정한다.
 - 라. 발전기별 정지계획 조정은 발전기 전력수급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립한다.<개정 2011.12.2>
- 7.2.4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는 최초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에 대하여 변경 또는 불만족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7월말까지 전력거래소에 변경된 정지계획을 발전사업자는 발전기 정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송전사업자는 공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17., 2015.5.7., 2019.12.31>
- 7.2.4.1 의견서에는 대상 발전기, 사유, 희망시기, 조정가능범위 등을 명기한다.
- 7.2.4.2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와 불만족스러운 발전기 정비일정에 대한 조정일 정을 반영하여 7.2.3.2의 과정을 통해 발전기 정지계획을 확정시킨다.
- 7.2.4.3 만일, 발전기 정지일정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급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력거래소가 발전기별 운전특성 등을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때 조정되는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와 는 충분하게 협의하여 재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7.2.5 재조정된 발전기별 정지일정은 최종 발전기 정지계획으로 확정하고, 아래

내용을 포함한 향후 2년간의 수급전망(안)을 수립하여 시행전년도 9월말까지 관련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5.3.17.>

- 가. 연간 월별 전력수급 및 하계 전력수급 전망
- 나. 발전설비 신·증설 및 폐지계획
- 다. 발전원별 예방정비량 및 공급능력 증가/감소내역
- 라. 발전사업자별 발전기 예방정비 일정
- 7.2.6 확정된 발전기별 정지일정은 당해연도 연간 발전기 정지계획으로 1월 일부터 시행하되, 월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절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 7.3 월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 조정절차
- 7.3.1 전기사업자(중앙급전발전기 보유 구역전기사업자 제외)와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 초과인 연료전지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연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또는 연간계획에 미반영된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가 정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월 20일까지 발전기 정지계획은 발전기 정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기저장장치의 정지계획은 공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집합전력자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5.7., 2015.9.30., 2016.5.12., 2018.12.12., 2019.1.2., 2019.12.31., 2020.10.1., 2021.7.1.>

7.3.1.1 제출자료

- 가. 발전사업자 <개정 2021.7.1.>
 - 연간 발전기 정지계획 변경시 : 7.2.1.1의 제출자료중 변동사항
- 연간계획 미포함 발전기 임시정지 요청시 : 정지기간, 희망일자, 조정 가능기간, 정지사유, 정지시 출력감소계획
- 시운전계획(예방정비후시험운전 포함)
- · 시간대별 출력증가/감소계획
- · 일자별 최대출력
- 나. 판매사업자 : 7.2.1.2의 제출자료중 변동사항
- 7.3.2 전력거래소는 전월 전력수요실적 및 익월의 기상전망, 사회적요인 등을 고려하여 익월의 일별 최대부하를 예측한다.
- 7.3.3 전력거래소는 연간 발전기 정지계획을 기준으로 전력수요, 계통운영여건 변동상황, 발전기 정지계획 변경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7.2.3.2의 과정을 통해 월간 수급전망(안)을 수립하며, 전력수급부족 대비 중앙급전발전기 보유 구역전기사업자 운영계획(발전기 정비 등을 고려한 발전가능용량및 구역수요 전망)을 매월 25일까지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13.>
- 7.3.3.1 발전기별 정지일정이 확정되면 아래와 같이 익월 수급전망(안)을 작성하

여 관련 전기사업자에게 매월 25일까지 통보한다. 단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다음 거래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7.1.>

- 가. 월간 주별 전력수급 전망
- 나. 월간 발전기별 정지계획
- 다. 발전사업자가 변경요청한 발전기의 정지일정 조정내역
- 7.3.4 확정된 발전기별 정지일정은 익월 발전기 정지계획으로 1일부터 시행한다.
- 7.4 주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절차
- 7.4.1 전기사업자(중앙급전발전기 보유 구역전기사업자 제외)와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0MW 이상인 비중앙급전발전기, 발전기 1기의 설비용량이 20MW 초과인 연료전지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월간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계획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또는 월간계획에 미반영된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가 정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주수요일까지 발전기 정지계획은 발전기 정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기저장 장치의 정지계획은 공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집합전력자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5.7., 2015.9.30., 2016.5.12., 2018.12.12., 2019.1.2., 2019.1.2.31..2020.10.1.>

7.4.1.1 제출자료

가. 발전사업자

- 월간 발전기 정지계획 변경시 : 7.2.1.1의 제출자료중 변동사항
- 월간계획 미포함 발전기 임시정지 요청시 : 정지기간, 희망일자, 조정 가능기간, 정지사유, 정지시 출력감소계획
- 시운전계획(예방정비후시험운전 포함)
- · 시간대별 출력증가/감소계획
- · 일자별 최대출력
- 나. 판매사업자 : 7.2.1.2의 제출자료중 변동사항
- 다. 송전사업자 : 7.2.1.3의 제출자료중 변동사항 [신설 2015.5.7.]
- 7.4.2 전력거래소는 월간계획에 미포함된 발전기의 임시정지 요청에 대해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주간 및 월간 정지계획에서 추가 검토 후 확정할 수 있 다.<개정 2011.12.2>
- 7.4.3 전력거래소는 월간 발전기 정지계획을 기준으로 전월 및 전주 전력수요 실적분석에 의한 수요변동사항, 발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의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여 다음 주의 전력수급 전망(안)을 수립하며, 전력수급부족 대비 중앙급전발전기 보유 구역전기사업자 운영계획(발전기 정비 등을 고려한 발전가능용량 및 구역수요 전망)을 매주 금요일까지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13.>

- 7.4.4 전력거래소는 7.4.2 및 7.4.3에 의해 확정된 임시정지계획 및 다음 주 발전기 정지계획을 발전사업자에게 매주 금요일까지 통보한다. <개정 2011.12.2>
- 7.4.5 확정된 발전기별 정지일정은 다음주이후 발전기 정지계획으로 시행한다.
- 7.5 발전기 정지통보 절차
- 7.5.1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 사항을 검토한 후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정지 가능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 7.5.2 월간·주간 전력수급전망 발표 후 발전기 정지일정 변경 및 임시정지 사유 발생시 발전사업자는 정지 시작일을 포함한 3일전까지 전력거래소에 발전기 정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청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월간·주간 수급사항을 검토한 후 정비일정 등을 결정, 통보한다. [신설 2011.6.30.] <개정 2019.12.13., 2019.12.31>

8.0 **송·**변전설비 휴전업무 절차

- 8.1 휴전작업의 일반원칙
- 8.1.1 전기설비의 휴전작업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수급의 균형, 계통안정운영, 설비의 보전 등을 검토하여 휴전작업 기간을 예정한다.
- 8.1.2 송·변전설비의 휴전작업은 가능한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8.1.3 급전지시, 설비감시제어 및 보호용 통신에 지장이 있는 통신선로의 정지 작업을 할 때에는 별도의 통신방법을 확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8.1.4 상시 정지중인 전기설비라도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8.1.5 작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절체 또는 전기사용자의 정전이 수반될 때는 해당 전기사용자와 사전 합의후 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8.1.6 전기사업자는 휴전계획 수립시 발전기 운전 및 정지계획을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04.4.22>
- 8.1.7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간 휴전업무 관련 신청 및 조정요청 등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 한 문서로서 진행한다. <개정 2004.4.22>
- 8.2 업무처리 방법
- 8.2.1 휴전작업 시행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승인사항, 통보사항, 긴급 사항 3가지의 휴전형태로 구분한다.
- 8.2.2 승인사항은 반드시 전력거래소의 승인을 득하고 시행하는 다음의 작업을 말한다.
- 8.2.2.1 345kV 이상의 전기설비
- 8.2.2.2 154kV 송전선로의 경우 승인 또는 통보사항 대상선로는 별도 합의한 바에 따른다.

- 8.2.2.3 발전기 정지 또는 발전기 출력증가/감소를 수반하는 작업
- 8.2.2.4 승인된 송·변전설비의 작업기간을 연장할 경우
- 8.2.3 통보사항은 전기사업자 자체 승인으로 시행하되 전력거래소에 통보후 시행하는 다음의 작업을 말한다. 단, 전력거래소에서 계통운영상 필요시 중지시킬 수 있다.
- 8.2.3.1 8.2.2.2항에서 정한 통보사항의 휴전작업
- 8.2.3.2 154kV 이상 조상설비(S.C. Sh.R. SVC 등)의 휴전작업
- 8.2.3.3 154kV 이상의 활선작업
- 8.2.3.4 계통보호 관련 설비(통신설비 포함) 정지시
- 8.2.3.5 발전소 154kV 변압기 휴전작업 [신설 2015.3.17.]
- 8.2.4 긴급사항은 돌발사태 발생시 전기사업자가 긴급히 요청하는 다음의 작업을 말하다.
- 8.2.4.1 돌발고장의 발생 우려로 긴급을 요하는 작업
- 8.2.4.2 돌발고장 사전제거 및 복구작업
- 8.2.5 송·배전사업자가 자체 시행하는 휴전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2.12.31]
- 8.2.5.1 154kV 고객전용선로(발전고객 제외) 및 154kV M.Tr [신설 2012.12.31]
- 8.2.5.2 66kV 이하 설비 [신설 2012.12.31]
- 8.3 휴전업무 관련서식
- 8.3.1 휴전업무 진행시 사용할 문서서식은 별지 제62, 63, 64호 서식과 같다.
- 8.4 연간 휴전계획 수립절차
- 8.4.1 전기사업자는 8.2.2항에서 정한 전력거래소 휴전승인 대상 송·변전설비에 대한 다음 연도의 1년간 휴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8월말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2에 규정된 345kV 이상 차단기는 연간휴전계획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개정 2004.4.22, 2005.10.10, 2008.10.31>
- 8.4.2 전력거래소는 제출된 연간 휴전계획을 전기사업자와 협의, 검토 및 조정하여 그 결과를 11월말까지 통보한다. <개정 2004.4.22, 2008.10.31>
- 8.4.2.1 전력거래소는 월별 발전기 정지계획 및 예측된 수요를 바탕으로 송변전설비 휴전시 안정적인 계통운영 가능여부를 검토하며, 상세한 검토사항은 8.8항을 참조한다.
- 8.4.2.2 송·변전설비 휴전작업 공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휴전작업 소요일수를 반 영한다.
- 8.4.2.3 8.4.2.1 및 8.4.2.2항에 의해 수립된 연간 휴전계획 일정을 전기사업자에 게통보한다. <개정 2004.4.22>
- 8.4.3 <삭제 2008.10.31>

- 8.4.3.1 ~8.4.3.3 <삭제 2008.10.31>
- 8.4.4 <삭제 2008.10.31>
- 8.4.3 확정된 송·변전설비 연간 휴전계획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월 간 휴전계획 조정절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항번호변경 2008.10.31>
- 8.5 월간 휴전계획 조정절차
- 8.5.1 휴전업무 진행은 연간 휴전계획 일정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 8.5.2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휴전업무 진행중 연간 휴전계획 일정에 대한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을 요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상대에게 제출 후 상호협의를 거쳐 세부일정을 조정한다. <개정 2004.4.22>
- 8.5.2.1 제출자료 : 휴전설비, 사유, 희망/가능시기 등
- 8.5.2.2 제출기한 : 휴전계획 개시일 전월 1일까지 <개정 2008.10.31>
- 8.5.3 조정된 월간 휴전계획 일정을 반영하여 월간 휴전계획을 매월 20일까지 발표한다.
- 8.5.4 확정된 월간 휴전계획은 익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5.5 전기사업자는 월간 휴전계획이 확정된 후 설비의 이상 정후 발생으로 추가적인 휴전작업이 필요하며, 다음 월간휴전 계획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전력거래소에 임시휴전을 요청한다. <개정 2004.4.22, 2008.10.31>
- 8.5.5.1 제출자료 : 휴전설비, 사유, 희망시기 [신설 2008.10.31]
- 8.5.6 긴급휴전
- 8.5.6.1 돌발사태 발생 등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8.5.6.2 전기사업자가 정규수속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전화요구에 의하여 전력거래소 관제센터의 승인을 받아서 작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정규 수속 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2, 2012.5.31., 2012.5.31., 2015.3.17.>
- 8.6 휴전승인
- 8.6.1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월간 휴전계획 일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조정을 요하는 측에서 변경된 휴전작업의 내용 및 사유를 상대에게 휴전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후 상호협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조정한다. <개정 2004.4.22>
- 8.6.2 전력거래소는 임시휴전 작업에 대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8.1조의 기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 후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3.9.18, 2004.4.22, 2006.9.14>
- 8.6.3 돌발고장 등의 우려로 전기사업자가 요청한 긴급휴전작업은 전력거래소 관제센터 근무책임자 승인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2.5.31., 2015.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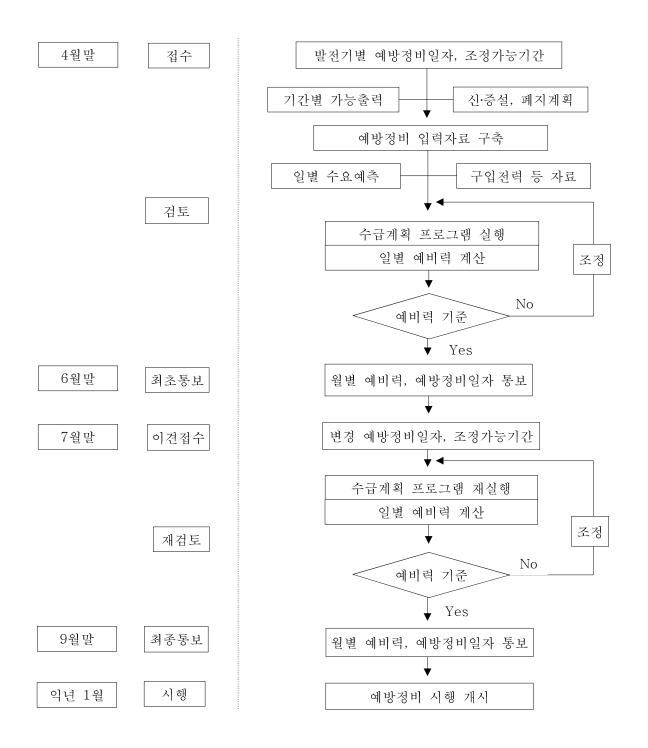
- 8.6.4 통보사항은 전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전력거래소에 매월 25일 까지 월간계획을 일괄하여 통보한다. 단, 다음의 발전소 154kV 변압기 통보 휴전은 작업 전 급전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4.22., 2021.1.1.>
- 8.6.4.1 발전기 정비 또는 고장 정지 기간에 휴전 작업일 경우 [신설 2021.1.1.]
- 8.6.4.2 발전기 정상 운전가능 기간에 발전 정지 또는 출력제한을 수반하지 않는 휴전 작업일 경우 [신설 2021.1.1.]
- 8.7 휴전시행
- 8.7.1 소정의 수속이 완료된 이후라도 계통여건 및 발전기 운전상태 등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일시를 변경시킬 수 있고, 또한 작업을 중지 후 송전을 지시 할 수 있다. 이때는 변경사유를 통보하고 최단시간 내에 송전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8.7.2 승인된 휴전작업에 대하여 해당설비 조작전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급전전화로 조작승인을 요청한다. <개정 2004.4.22>
- 8.7.3 전력거래소는 계통안정 운전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휴전 승인된 설비에 대하여 휴전조작을 승인한다.
- 8.7.4 전기사업자는 휴전조작 완료후 전력거래소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4.4.22>
- 8.7.5 휴전작업이 완료되면 예정시간 이내라도 전기사업자는 휴전작업 완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4.4.22>
- 8.7.6 기타 급전지시 및 조작 절차는 별표 11에 따른다.
- 8.7.7 악천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그 경위를 전력거래소 관제센터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는다. <개정 2004.4.22., 2015.3.17.>
- 8.7.8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 조작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 8.7.9 전기사업자는 승인 및 통보된 휴전작업 시행 중 인근 전력설비 고장시 정 전발생 예상 154kV 이상 전기사용자에게 휴전관련 사항을 사전에 통지한 다. [신설 2012.12.31]
- 8.8 휴전관련 검토
- 8.8.1 휴전내용 검토
- 8.8.1.1 연간 휴전계획을 기본으로 하며, 동일설비에 대하여는 동일사유로 6개월이내 재휴전 금지를 원칙으로한다(단, 임시휴전 및 긴급휴전은 제외한다).
- 8.8.1.2 휴전사유 및 가능성
- 8.8.1.3 관련 발전기 운전 및 정지 계획과의 적합성
- 8.8.1.4 휴전대상 및 기간은 안전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하여 전력계통 안정 및 경제급전에 기여토록 한다.

- 8.8.2 수행하는 계통검토
- 8.8.2.1 사용 프로그램: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단, 전력계통 해석프로그램 간 의미있는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PSS/E 프로그램의 결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5.9.30.>
- 8.8.2.2 과부하 검토
- 8.8.2.3 계통전압 검토
- 8.8.2.4 필요시 추가사항: 과도안정도, 전압안정도, 차단용량 검토
- 8.8.2.5 북상조류 관련 선로 휴전시 북상조류한계 조류량 검토
- 8.8.3 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기술검토를 수행할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 입력데이터 file을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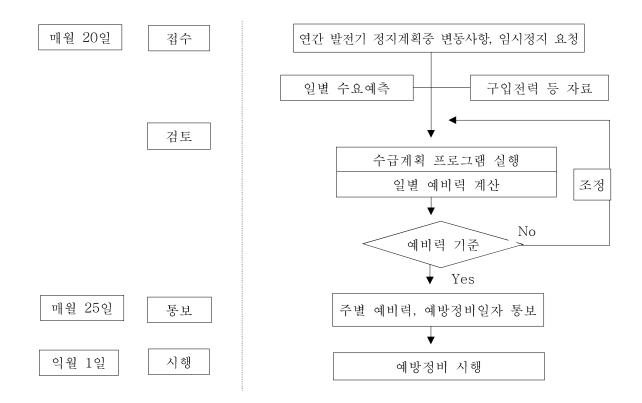
9.0 붙임

- 9.1 연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 절차도
- 9.2 월간 및 주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 절차도
- 9.3 발전기 정지 통보 절차도
- 9.4 휴전업무 절차도

연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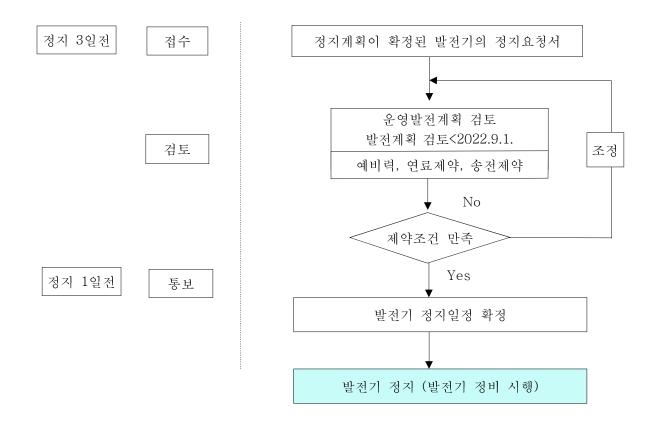
월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 절차도



주간 발전기 정지계획 조정 절차도

매주 수요일	임시정지 요청, 변경사항 접수
	예비력, 계통안정여부 검토
매주 금요일	발전기 정지일정 통보
다음주 이후	시행

발전기 정지 통보 절차도



휴전업무 절차도

